8.7 부속자재 설치

- (1) 콘크리트 타설시 콘크리트의 누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엔드 클로저(End closure)를 설치하여야 하며, 설치 시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 - (가) 엔드 클로저 설치부위는 길이방향의 맞댐 조인트 부위, 골방향이 변경되는 부분, 기둥, 벽, 개구부 주위 등에 설치하여야 한다.
 - (나) 시공 후 데크플레이트나 이음부위에 콘크리트 누출의 우려가 되는 틈은 콘크리트 타설에 앞서 철물이나 테이프로 보강하여야 한다.
- (2) 데크플레이트의 폭 조정을 위하여 설치되는 커버(필러) 플레이트(Cover plate or Filler plate) 설치 시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- (가) 최소두께는 1.2mm이상으로 하여야 한다.
- (나) 커버 플레이트는 데크플레이트 골방향이 바뀌거나 가장자리, 기둥, 벽 등 의 접합부위에 설치하여야 한다.
- (3) 콘크리트의 타설시 누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콘크리트 스토퍼 (Stopper) 설치 시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- (가) 콘크리트 스토퍼는 슬래브 끝면인 데크플레이트 외측면 가장자리 부위에 설치하여야 한다.
- (나) 콘크리트 스토퍼는 슬래브 두께에 맞추어 제작하며 부착위치로 해당자재 를 소운반하며 구체 도면을 따라 설치위치 및 타입을 확인하여야 한다.
- (다) 지정위치에 고정하고 1000mm간격으로 점용접 하여 고정한다. 용접은 중 앙부를 선행하고 인접한 콘크리트 스토퍼를 같은 모양으로 하고 나서 단 부의 용접을 실시한다.
- (4) 스페이서(Spacer)는 D6 이상의 철선을 사용하여 데크플레이트 1~2산 부위마다 1개씩 설치하며 설치간격은 1000mm로 하여야 한다.
- (5) 천정시공과 설비배관을 위해 설치하는 인서트 행어는 데크플레이트 하부의 인서트 피트부위에 설치하여야 한다.